

+2023010654005+



담낭 절제술(복강경, 개복) 동의서

진단명	GB stone / CPD stone impacted
수술/처치/검사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with T-tube choledochostomy (T-tube 총담관 / chole duct lithotomy)
참여 의료진	집도의1 [redacted] 전문의(전문과목: 외과), □ 일반의 집도의2 [redacted] 전문의(전문과목:), □ 일반의(진료과목:)
시행 예정일	2023년 01월 09일

1. 환자의 현재 상태

- ☒ 고혈압 ☐ 자혈병 담낭도병 ☐ 알레르기 ☐ 흡연 ☐ 특이소견없음
☐ 특이체질 ☐ 출혈소인
☐ 투약사고 ☐ 기도이상
☐ 수술력 ~~수술력~~ (-) ☒ 약물복용력 (전통적, 한국적)
☒ 기타질환 (심장, 호흡기, 신장질환 등)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

2. 설명사항

(1) 수술(시술, 검사)의 목적 및 효과

1) 현재 상태

귀하는 검사 결과 담낭 질환이 의심되는 상태로 수술을 통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2) 담낭절제술(복강경/개복)의 적응증
담석증, 담낭염증, 선근증증, 급성담낭염/만성담낭염, 장티푸스성 담낭염, 조기담낭암, 기타

3) 담낭절제술(복강경/개복)이란

귀하에게 예정된 수술은 담낭절제술이며 이는 개복을 하거나 복강경 장비를 이용하여 담낭을 제거하는 치료적 목적과 동시에, 명확한 진단을 통해 필요한 경우 향후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대부분은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며, 외과 의뢰인이 판단했을 때 복강경 수술이 어려운 경우는 개복하여 담낭절제술을 진행합니다.

(2) 수술(시술, 검사) 과정 및 방법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합니다. 개복 담낭절제술의 경우 우측 갈비뼈 하방에 20cm 가량의 피부절개를 가합니다.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경우에는 배꼽 상방(또는 하방)에 1.5cm의 절개를 한 후 10mm 투관점을 위치시키고 복강 내에 가스를 주입합니다. 그 후 양치 하부에 10mm, 우측 갈비뼈



하방과 우측 옆구리에 각각 5mm의 두관점을 위치시킨 후 복강경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담낭절제를 시행합니다. 수술 후 필요에 따라 조직액이나 림프액 등의 액체가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발현 가능한 합병증(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1) 발생 가능한 문제점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할 때 특정 경우에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복부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복강 내 유착이 심하면 두관점 삽관 또는 유착박리 시에 장기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복부비만에 심한 경우 복벽의 두께가 두관점의 길이보다 깊어 기술적으로 두관점 삽관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담낭의 급성염증이나 괴사성 병변이 있는 경우 조직이 약해져 출혈이나 담즙 누출을 일으켜 담도 손상 위험이 증가하게 되며, 만성염증으로 담낭의 섬유화가 심하고 담낭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박리가 어려워서 주변 장기의 손상이나 대량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 약 1/3 에서 담낭천공이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 담즙과 담석의 누출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낭종벽의 출혈로 수술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도에 해부학적 병변이 있는 경우 수술 중 담도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집도의의 판단에 따라 복강경수술 도중 개복 담낭절제술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수술 후 상처부위 통증이 있으며 전신마취의 기관삽관으로 인하여 목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랫배 및 옆구리 부위의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수술 중 횡격막 자극에 의해 발생하며 대개의 경우 수술 1 일이 경과하면 호전됩니다. 모든 외과 수술에서 마찬가지로 이지만 눈에 보이는 피는 전부 지혈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가 나는 경우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재수술(0.3%)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처에 흉터, 감염, 농양,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도 손상은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약 0.1~0.3% 가량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즙누출이 발생하는 경우 약 4~6 주간 배액관을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후 사망한 경우는 합병률 약 0.17%로 보고되었습니다.

(4) 수술(시술, 검사) 관련 주의사항 (수술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 1) 수술 전에는 마취의 안전을 위하여 금식을 시행하고, 수술 후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식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2) 수술 후 예스퍼온 느낌이나 구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마취제나 진통제에 의한 것으로 심한 경우에는 무릎을 유지하는 기계의 작동불 연추면 호전되기도 합니다.
- 3) 조직액과 림프액 등의 액체가 수술부위에 고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술 중에 삽입하는 배액관은 그 양을 매일 점검하여 일정한 이하로 줄면 제거하게 됩니다.
- 4) 퇴원은 일반적으로 수술 2-3 일 후(개복 담낭절제술을 받은 경우는 7-10 일)에 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입원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5) 수술 후 1주일 뒤 외래에 방문하여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수술상처의 봉합사를 제거하게 됩니다.

(5) 수술(시술, 검사)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

수술(시술,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시술, 검사)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시술, 검사)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술(시술, 검사) 방법 및 범위 변경)

변경된 방법 및 범위:

사유:

(이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시술·검사)의 시행 전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다만, 수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수술행위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의 시행 후에 지체 없이 그 변경 또는 추가의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6) 주치의(집도의)의 변경 가능성

수술(시술,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응급환자의 진료, 주치의(집도의)의 질병, 출산 등 임신상 사유, 기타 변경사유)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집도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집도의) 변경 ☒)

사유:

)

(이 경우 수술(시술·검사)의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다만, 수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집도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의 시행 후에 지체 없이 구체적인 집도의의 변경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7) 기타사항

1) 예정된 의료행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

당낭축농, 수종, 고지, 천공, 그리고 담도장관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담석이 총담관으로 빠져나가 췌장이나 췌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당낭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 ☐ 없음 ☒ 있음

환자의 전신상태가 수술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경우에는 경피적(경간) 담낭조루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또는 환자)에 대한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경)의 목적·효과·과정·예상되는 합병증·부유증 등에 대한 설명(필요시 필지 포함)을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경)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위의 설명으로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경)에 협력하고, 이 동의서 제1조의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의 판단에 위임하여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경)을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확인함 ☒

수술(시술·검사)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이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경)의 시행 전에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

주치의(집도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에 대한 설명을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경)의 시행 전에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

본 치료방법의 수가 중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과 선택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할 것을 동의합니다. -----확인함 ☒

* 주소:

* 휴대전화:

< 보호자 또는 대리인 >

* 이름 _____ 서명 _____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_____ * 집전화: _____
* 주소: _____ * 휴대전화: _____
* 환자와의 관계 _____

<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 >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수술동의서 표준 약관]

- ☐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로서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것에 명백함
☐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함
(이 경우,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본 동의서에 첨부하여야 함)
☐ 기타 _____

- *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어떤지 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동의서에 첨부함)
* 환자(또는 대리인)는 이 동의서 또는 별지 사본에 대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에 있을 경우 자체 없이 교부하도록 합니다. 단, 동의서 또는 별지 사본 교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술(검사, 시술) 후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로 검사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